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 활용과 운용

발표자 **한 상 복**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중재위원

일상생활에 미치는 대중매체의 영향력으로 볼 때 언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바른 정보를 제공해 줄 때에는 대단히 유용한 것이지만, 불필요하고 틀린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그 역기능으로 인한 피해도 또한 그만큼 큰 것이다. 따라서 언론이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간에 오보를 하거나 사실적 주장을 공표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제 5 공화국 헌법은 언론침해금지과 이에 대한 피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언론기본법도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정정보도청구권과 그에 따른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언론중재위원회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오늘의 언론중재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언론기본법이 규정한 현재의 정정보도청구권제도를 갖추기 이전에도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령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신용훼손을 처벌하는 형사상의 제재나 손해배상청구 또는 사죄광고 청구 등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종래의 구제제도는 법률상 언론사쪽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주관적 책임의 소재와 피해자쪽의 손해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입증의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소송절차에 따르는 시간의 지연성과 비용의 부담때문에 충분한 구제 수단이 되지 못하였고 또한 국민개개인이 막강한 영향력과 거대한 자본과 조직을 가진 언론기업을 상대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법정투쟁을 하기에는 개인의 힘이 너무나 약한 것이 사실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와 언론사간의 분쟁을 적절하게 중재함으로써 당사자들이 법적 투쟁을 거치지 않고도 그 들간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처리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이 중재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나 언론사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언론중재제도의 의의는 중재의 중립성을 지킴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평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국민개개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민 개개인에게는 언론침해를 받았을 경우, 두려움 없이 언론중재를 통해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에 따라 비용을 들이지 않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면서도 정정보도청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이런 점에서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 활용과 운용은 언론사, 피해자 쌍방을 위해서 큰 이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언론중재위원회가 1981년 3월 31일 발족하여 1984년 5월 7일까지 처리한 중재결과를 보면, 첫째 81년에 44건, 82년에 50건, 83년에 7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언론침해의 내용은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가 75% 가량으로서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이 신용권침해, 저작권침해 등이다. 중재처리결과는 중재에 의한 합의가 이뤄져 신청인이 원하는 대로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해준 사례는 지금까지 접수된 중재신청 총 건수의 28%로서 1/3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신청인이 중재과정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취하한 사례가 총신청 건수의 1/3을 차지한다는 사실도 언론중재의 효율적인 활용과 운용의 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작성한 정정보도내용을 언론사가 그대로 보도하지 않고 다른 형식 가령 P.R 기사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중재신청을 스스로 철회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언론사가 스스로 언론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정정보도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잠재적으로 가지고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3년 동안의 언론중재위원회 운영실태에 나타난 결과로써 우리는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일반적으로 낮고, 법에 의해 자기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의식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었다.

한편 중재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불성립과 취하의 배경에서 한국인의 특유한 분쟁해결방법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다. 가령 공식적이고 법적인 해결보다는 비공식적인 화해나 조정을 모색하는 경향이 그것이다. 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상호간에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상하의 종적인 관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당사자들간의 분쟁해결방법은 더욱 더 비공식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사회적 성격을 최재석 교수는 둥글둥글하고 모가 나지 않는 호박주의 또는 적당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의 대립관계가 다른 전체 생활면에서의 적대관계로 확대되기 때문에 설사 자기의 주장이 정당하다손

치더라도 감정적인 대립을 야기시키면 그 후의 다른 전체생활면에서 적대관계로 확대될까 염려하며 조심스럽게 처신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봤자 너만 손해」라거나 「뒷발이 나지 않을까 후환이 두렵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결국 법이 보장해주는 자기의 권리주장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언론침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제도의 활용에 있어서도 그러한 조심성과 후환을 두려워하는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이 작용하지 않는다고는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3년 남짓한 언론중재제도의 운용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언론중재제도의 보다 더 효율적인 활용과 운용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 특히 언론침해의 피해자와 언론사 및 언론중재위원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국민 개개인은 법이 보장하는 자기의 권익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인 정정보도청구권을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그러한 권리를 행사해야만 민주국민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한편, 언론사로부터 정확한 보도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엽말단적인 언론의 오보에 과민한 반응을 나타내거나 정정보도청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그러한 반응과 남용이 바람직한 언론의 보도활동을 제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언론사쪽에서도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행사와 언론중재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세로 받아들여야 한다.

중재과정에서 언론사가 스스로 언론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편법을 써서 다른 형식으로 피해를 보상해 준다고 약속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중재신청을 취하시키는 것은 언론사와 피해자양쪽에서 다같이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제도의 근본취지를 왜곡시키는 행위이다.

언론중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책임은 다분히 언론중재위원회에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언론중재위원회는 중재기능을 가장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차적으로 언론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중재신청을 했을 때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신중하게 결정함으로써 권리의 남용을 방지하고, 일단 착수된 언론중재는 중립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흔히 언론중재는 피해자인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정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만큼 약자를 보호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지 약자의 편에 서라는 것은 아니다.

중재부가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할 때에는 당사자간에 상호이해를 조성함으로써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실사 중재의 결과가 불성립으로 처리되더라도 중재과정에서 쌍방의 진술을 들은 후 사안이 분명히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중재신청사건에 대하여 중재부가 시정권고를 한다는 의견을 상항에 알림으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중재신청을 할 때에 구체적인 권리구제의 절차와 방법 등 실무적인 일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다.

그 밖에 언론중재위원회 자체가 추진하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인 활용과 운용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가령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를 조사하고 홍보방안을 모색하는 과제라든지, 지금까지 중재에 관여했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느끼고 있는 언론중재제도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제로 응용이 가능한 연구과제를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졸업

- 미국 미시간주립대 인류학박사

- 현재 서울대 인류학과교수, 문공부정책자문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